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666
----------	-------

발의연월일 : 2025. 7. 23.

발 의 자 : 김미애 · 김 건 · 김성원
김선교 · 김상훈 · 김위상
권영진 · 김도읍 · 김승수
강승규 의원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이나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기준 등을 적용하되, 노유자(老幼者) 시설 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2018년부터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가 의무화되고,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에는 간이스프링클러의 설치가 의무화되었음.

그러나, 2025년 6월 부산의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기 이전의 기준이 적용되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이로 인해 그 피해가 컸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정소방대상물 중 공동주택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의무를 법률로 규정하고, 기존의 공동주택에는 이 법 시행 후 2년이 경과된 날까지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공동주택을 추가하고,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화재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1항 후단 등).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본문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이 경우 특정소방대상물 중 공동주택의 관계인은 공동주택의 모든 층에 소방시설 중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할 때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2조제1항 전단”을 “제1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2조제1항 전단”을 “제1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2조제1항 전단”을 “제1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공동주택

-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54조제1항제1호 중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55조제1항제1호 중 “제12조제1항”을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2조제3항”을 “제12조제4항”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제12조제3항”을 “제12조제4항”으로 한다.

제57조제1호 중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호 중 “제12조제1항”을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시설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정 또는 시행되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방시설 설치 기준 강화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기존의 공동주택(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공동주택을 포함한다)의 관계인은 제12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① ----- ----- ----- ----- . 이 경우 특정소방대상물 중 공동주택의 관계인은 공동주택의 모든 층에 소방시설 중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u><신 설></u>	②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할 때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 화재 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쇄·차단은 할 수 있다.

④ 소방청장은 제3항 단서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하여 폐쇄·차단을 하는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요령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등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
제1항 및 제2항-----

-----.

④ -----
제1항 및 제2항-----

-----.

⑤ -----제4항-----

-----.

⑥ -----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 시설의 작동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소방시설정보관리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⑥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5항에 따른 작동정보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생략)

제13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제1항 및 제2항-----

⑦ -----

-----제6항-----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제13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

-----제12조제1항-----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가. ~ 라. (생략)

<신설>

②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제12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4. (생략)

⑤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로 인정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

1. (현행과 같음)

2.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공동주택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제12조제1항-----

-----.

1. ~ 4. (현행과 같음)

⑤ -----

-----제12

조제1항-----

있다.

<신 설>

제54조(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한다)을 받은 관계인 등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치명령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등을 명령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명령등을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2. ~ 6. (생략)

② (생략)

제55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누구든지

-----.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54조(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① -----

-----.

1. 제12조제3항-----

2.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5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
방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한
자

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
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3. (생 략)

② ~ ④ (생 략)

제56조(벌칙) ① 제12조제3항 본
문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에 폐
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 략)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
23조제6항, 제37조제7항 또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

1.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

--

2. 제12조제4항-----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6조(벌칙) ① 제12조제4항---

-----.

② (현행과 같음)

제57조(벌칙) -----

-----.

1. 제12조제3항-----

2. ~ 9. (생략) 제6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지 아니한 자 2. ~ 15. (생략) ② (생략)	2. ~ 9. (현행과 같음) 제61조(과태료) ① ----- ----- ----- -----. 1.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 ----- ----- 2. ~ 1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